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9호선 민자유치방안 검토 및 시설 사업기본계획서 작성연구 보고서 다. 교통방송본부 ○ 해당사항 없음 라. 지하철공사 ○ 신정차량기지 조명 보강사업 자료 ○ 해외연수 관련자료(참가인원 및 횟수) ○ 부동형충전기반, 고배선로, 콘크리트전주,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내구년한 현황 ○ 레일연마차의 국제경쟁입찰시 생산회사별 제안서 및 광통신 관련, 성미전자와 경쟁회사의 제안서 ○ 운수수익·영업비용에 대한 최근 5년간 현황 ○ 추경예산과 기정예산의 비교 제출(5년간) ○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외부전문가 용역의 결과 점검 대상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개정된 정관, 직제규정 개정내용 제출(직제표 포함) 마. 도시철도공사 ○ 부채대책의 자체 실천 프로그램 ○ 1년간 용역, 물품구입의 수의계약 현황 ○ 모니터의견서 사본, 모니터제도계획서, 책자 등 서류사본 일체 ○ 경영혁신계획 4분야 33개 사업 세부내용 ○ 임직원 경영토론회 개최결과 현황 ○ 노무관련 특수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도시철도 개통이후~2000. 5월까지 균열, 누수로 인한 보수현황 ○ 자판기 매입금, 월부료, 보증금 등 자판기 관련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td style="padding: 2px;">623</td><td style="padding: 2px; text-align: right;">2000년 7월 일 행정자치위원회</td></tr> </table>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5일</p> <p>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p>	의안 번호	623	2000년 7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p>2. 제안설명의 요지(행정관리국장 : 김재종)</p> <p>가. 제안이유</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성적우수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등의 재원인 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에 기여하려는 것임.</p> <p>※ 현재는 행정자치부훈령 제9호인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임.</p> <p>나. 주요골자</p> <p>□ 기금설치 및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3조).</p> <p>○ 기금의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특별지원금 -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p>※ 현 운영금액 : 703,483,564원 ('99.12.31 현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교육원 : 657,538,125원 - 소방학교 : 45,945,439원 <p>□ 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4조).</p> <p>○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서울특별시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중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과정의 훈련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상금 등.</p> <p>□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심의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p> <p>○ 위원의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 - 위원 : 관계공무원과 교육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 <p>○ 심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관한 사항 - 수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적립·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 <p>○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의 개최 :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
의안 번호	623	2000년 7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72 (第18回-第4次)

<p>는 필요시 개최</p> <p>-의 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p> <p>□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공무원을 지정함.(안 제10조).</p> <p>○기금운용관 :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공무원교육원계정),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장(소방학교계정)</p> <p>○분임기금운용관 :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공무원교육원계정),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교학과장(소방학교계정)</p> <p>○기금출납원 : 분임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공무원</p> <p>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종식)</p> <p>□제안사유와 기금의 조성경위</p> <p>○동 조례의 제안사유는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성적우수자에게 상금 등을 지급하여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양양에 기여코자 지방공무원 교육시상기금을 설치 운용하려는 것으로서 2000.6.13 서울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p> <p>○동 기금은 1987년 당시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던 전두환 대통령께서 일해재단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공무원교육시상 재원으로 총무처를 통하여 배분한 17억 3천 7백만원중 서울시 지방공무원에 배정된 2억 4천 7백만원, 소방학교 3천 7백만원을 최초 재원으로 조성하여 1999.12.31 현재 이자수입과 교육시상금을 가감한 기금현액은 공무원교육원 6억 5천 7백만원, 소방학교 4천 5백만원으로 총 7억 3백만원임.</p> <p>○동 기금은 그동안 행자부 훈령인 공무원 시상기금 규정을 근거로 하여 관리 운용하였으나, '99.9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의 일체 정비방침에 따라 행자부에서는 동 기금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임.</p> <p>□주요 조문별 의견</p> <p>○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재원 조성은 대통령 특별지원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만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p>	<p>음.</p> <p>기금의 재원조성은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만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동 기금의 조성은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금조성에 한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의시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항에서 기금의 계좌 구분 설치와 제2항의 기금의 사용은 전년도 운용수익의 90% 범위안에서 지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p> <p>기금의 관리·운용은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예탁방법, 기금의 출·납 등 최소한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하겠음.</p> <p>○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운용 및 교육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조례운영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규칙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p> <p>○끝으로 동 기금을 행정자치부의 훈령으로 현재까지 운용하였다고는 하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운용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 때늦은 감은 있으나 늦게나마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제정조례안만큼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 등을 준용하여 소기의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리·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심사결과 : 수정가결(제석위원 8명, 전원일치)</p> <p>7. 수정안의 요지</p> <p>가. 수정이유</p> <p>○기금조성이 너무나 한정적이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과 결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명문화하기 위함.</p> <p>나. 수정 주요골자</p> <p>○안 제3조(기금의 조성) 중 기금조성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 “대통령 특별지원금”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하고, -제3호 “기타 수입금”을 신설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에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 이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토록 함. ○ 제12조(시행규칙)를 신설하여 위임규정을 둠.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2px;">의안</td> <td style="padding: 2px;">624</td> </tr> <tr> <td style="padding: 2px;">번호</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2000년 7월 일 행정자치위원회</p> <p>1. 심사경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0년 6월 16일</p> <p>다. 상정일자 : 제1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0년 6월 28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행정관리국장 : 김재종)</p> <p>가. 제안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하던 중 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상이등급 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임. 안 제2조 제3항)</p> <p>나. 주요골자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하던 중 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상이등급 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임.</p> <p>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종식) ○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p>	의안	624	번호		<p>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이 2000.1.1부터 1개 등급(7급) 추가 신설됨에 따라 신설된 상이등급 7급인 국가유공자도 기존 상이등급(1-6)과 같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로자 함임.</p> <p>○ 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봉사하던 중상이자가 된 자들로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1급 내지 6급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상이등급 7급상이국가유공자들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p> <p>○ 또한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상이국가유공자 모두를 면제하고 있고, LPG 연료사용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시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p> <p>○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9개 시·도에서는 면제 확대에 찬성하였고(서울 50%감면, 대전 세수보전 요청), 나머지 7개 시·도에서는 지방재정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p> <p>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p> <p>5. 토론요지 : 없음</p> <p>6. 심사결과 : 원안가결(제석위원 8명, 전원일치)</p> <p>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에대한수정안</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안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p>안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p>
의안	624				
번호					